

2018. 3. 26.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입학홍보처

2018학년도 대경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에 의거, 본 대학의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2019학년도 대입전형 반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대학별 고사유형	전형명	계열	모집요강에 제시한 출제 범위 (과목명)	관리 번호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면접· 구술고사	전체전형	전체계열 (실기고사 실시 학부/과 제외)														○

- 교과 외 문항 : 선행학습 유발요소(요인) 없음
- 면접·구술고사 : 교과 외 문항으로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 면접, 학생부 내용 면접, 면접사전조사서 내용 면접 등
 - * 면접사전조사서 : 대학자체 양식(자기소개서 양식 유사 / 공통질문, 학부(전공)/과 관련 질문으로 구성)으로 면접 전 작성 후 면접 시 제출
- 실기고사 실시 학부/과 : K-POP과, K-모델연기과, K-뮤지컬과, 공연예술학부, 모델패션아트스쿨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결과
대학별고사 실시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3.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1) 대경대학교 학칙 제5장 입학
 - * 제20조의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 2)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1) 관련법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2)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비고
			시작일	종료일	
위원장	김송병	입학홍보1처장	2018-03-05	보직 재임기간	당연직
위원	성오현	교학2처장	2018-03-05	2019-02-28	교원
위원	권상헌	입학홍보팀장	2018-03-05	2019-02-28	직원
위원	김희석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	2018-03-05	2019-02-28	교사
위원	이종목	간호학과 재학생 학부모	2018-03-05	2019-02-28	학부모

- * 외부위원의 경우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40%를 차지하며, 현직 고등학교 교사 및 면접·구술고사를 응시한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

다. 2018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1) 평가일정 : 2018년 3월 12일(월) ~ 2018년 3월 23일(금)
- 2) 평가절차

2018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계획 수립	2018.03.12.(월)
---------------------------	----------------



자료 준비 (대상 : 2018학년도 면접·구술고사 실시 계열)	2018.03.13.(화) ~ 2018.03.21.(수)
---------------------------------------	------------------------------------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주최 평가실시 및 심의 의결	2018.03.23.(금)
-----------------------------	----------------



2018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2018.03.30.(금)
------------------------------	----------------

- 3) 평가방법 :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고려한 면접·구술고사의 적절성 검토
 - 가) 교과 지식과 관계없는 면접·구술고사의 질문문항 및 채점표 등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적합성 및 적절성 여부에 대해 심의
 - 나) 모집단위별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선행학습 유발요소 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의 비전 및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성 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 다)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 정책 여부 검토

3.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 본 대학 면접·구술고사의 경우 지원자의 인성, 학생부 내용, 면접사전조사서 내용 등 고교 교육과정 외 문항으로 구성

나. 금년도 개선 사항 요약

- 1) 차수별 면접·구술고사 종료 후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후 모집단위별 평가 항목 의견 수렴(사전 검토를 통해 선행학습 유발요소 및 차별 정책 여부 유무 확인)
 - 2) 면접·구술고사의 활용 :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면접 태도, 전공에 대한 이해력 등을 평가
 - 가) 대학비전(Difference is the Value) 및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인재 선발을 위해 전체계열 면접·구술고사(또는 실기) 성적 반영(모집단위별 30~70% 성적 반영)
 - 나) 정원 내 특별전형 중 대학자체기준전형의 경우 면접·구술고사(또는 실기) 성적 100% 반영(학생부 및 수능성적 반영 안함)
 - 3) 면접·구술고사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후 전년도 결과 자료 비교 (분석결과 평가항목은 큰 편차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
- ※ 매년 본 대학은 모집단위별 평가항목(질문) 및 배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행학습 유발요소 및 차별 정책 여부를 검토하고, 대학비전 및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인재선발을 위한 인성, 학생부 내용, 면접사전조사서 내용 등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는 면접·구술고사 실시. 또한 면접·구술고사 마감 후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면접·구술고사 시 반영

4. 문항 분석 결과 요약

대학별 고사유형	전형명	계열	평가항목				교육과정 준수여부
면접· 구술고사	전체전형	전체계열 (실기고사 실시 학부/과 제외)	면접사전 조사서	인성/적성	전공이해	직업관/ 장래희망	교과 외

- ※ 면접·구술고사 실시
- ※ 실기고사 실시 학부/과 : K-POP과, K-모델연기과, K-뮤지컬과, 공연예술학부, 모델패션아트스쿨

가. 방법 :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 학생부, 면접사전조사서 기재 사항을 중심으로 다대일 면접(면접위원 3~4명, 지원자 1명) 또는 다대다 면접(면접위원 3~4명, 지원자 3~5명)을 실시하여 평균 점수로 반영

나. 평가항목 : 인성/적성, 학생부 기재 내용, 면접사전조사서 기재 내용 등

- 면접사전조사서(공통질문, 학부(전공)/과 관련 질문으로 구성)는 면접 전 작성 후 면접 시 제출

다. 평가문항 예시

- 1) 면접자세/자신감/언행/예절 - K-뷰티과
- 2) 적성/발전가능성 - VMD과
- 3) 언어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 - 간호학과
- 4) 봉사활동/동아리활동 - 경찰군사학부
- 5) 지원동기 및 전공에 대한 지식 - 경호스포츠과학학부
- 6) 특기/자신의 장점 - 뷰티아트스쿨
- 7) 성실성/봉사정신 - 사회복지과
- 8) 안경사의 직업관과 장래희망 - 안경광학과
- 9) 인성/도덕성 - 유아교육과
- 10) 학업이수계획/학과 선택 동기의 적합성 - 푸드아트스쿨

5.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 본 대학은 산학일체형 CO-OP교육 및 문화융복합 특성화 교육 대학으로 남다른 가치를 지닌 인재선발을 위해 면접·구술고사 및 실기고사를 실시하고, 면접·구술고사 평가항목의 기준은 인성 및 적성, 전공에 대한 이해, 학생부 기재 내용, 면접사전조사서 기재 내용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에 따라 선행학습이 유발되도록 한 요소가 없음

나. 반영계획 및 개선 노력

- 본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선행학습 유발요소가 없으므로, 기 수립된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면접·구술고사 평가항목 기준을 유지 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본 대학의 비전(Difference is the Value) 및 교육목표(STAR : S-specialist, T-technician, A-adventurer, R-relationship)에 부합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 대학의 본래 목적인 직업교육에 부흥하는 입학전형을 지속적으로 강구 할 계획임

6. 부록

가. 2-가-1)의 규정 : 대경대학교 학칙

제5장 입학

제20조의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나. 2-가-2)의 규정 :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의거 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의 적용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및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를 대상으로 하되, 실기고사(예체능)는 예외적으로 적용에서 배제한다.

제3조(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홍보1처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본교의 교직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8.31.>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홍보처에서 관장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며, 간사는 입학홍보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8.31.>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 및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의 공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7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2조(구성 및 운영) ③항, ⑤항의 입학처장 명칭은 '입학홍보1처장' 입학처 명칭은 '입학홍보처'로 개정한다.
